

5월 3주

알아두면

도움되는

금융소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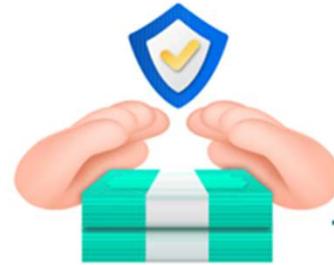


2025. 5. 15.



#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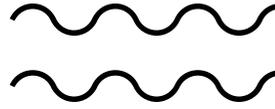
- ☑ 은행·저축은행,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
- ☑ 퇴직연금(DC형·IRP), 연금저축, 사고보험금 보호한도



현행 5천만원에서  
→ **1억원**으로 상향

「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」  
입법예고 실시(2025.5.16.~6.25.)

# ◆ 예금 보호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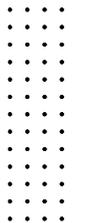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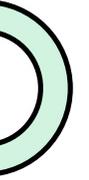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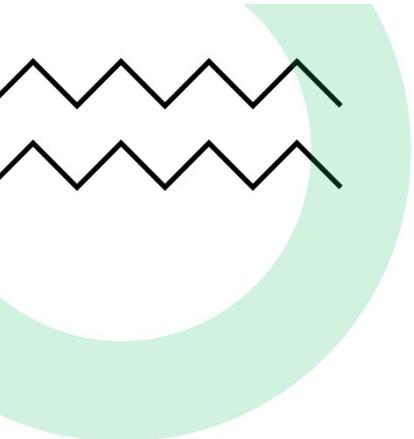
'25.9.1일부터 은행,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(신협,농협,수협,산림조합,새마을금고)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된다.

## ※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예금

은행,저축은행예적금,보험회사 보험료,증권회사 예탁금등

(보호대상 금융상품참고: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-제도.정책-예금자 보호 제도-보호대상)





또한,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,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,연금저축(공제),사고보험금(공제금)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 소득보장,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.

\*퇴직연금 확정기여형(DC),개인형(IRP) 퇴직연금,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으로 운용하는 금액

